

의안번호	제 557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김국기 의원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5일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국기 의원 발의)

의안 번호	557
----------	-----

발의연월일 : 2020년 10월 5일  
발 의 자 : 김국기 의원  
찬 성 자 : 박성원, 최경천, 김영주,  
이수완, 임동현, 정상교 의원

## 1. 제안 이유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과 건강을 위해하는 학생 비만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관리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교육감 등의 책무(안 제3조)
- 나. 계획 수립 등(안 제4조)
- 다. 교육 지원(안 제5조)
- 라. 건강체력교실 운영(안 제6조)
- 마. 프로그램 개발 지원(안 제7조)
- 바. 비만 예방교육 위탁(안 제8조)
- 사. 비만도 조사(안 제9조)
- 아. 홍보(안 제10조)
- 자. 협력체계 구축(안 제11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관계부서 협의: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

라. 기 타

1) 입법예고: 충청북도의회 공고 제2020-78호

(2020. 9. 24. ~ 2020. 9. 28.)

2)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 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내 학교의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
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및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5. “건강체력교실”이란 「학교체육진흥법」 제9조에 따라 학교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계획에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생건강증진계획에는 학생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비만 예방교육 기본방향
2. 비만 예방교육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5. 비만 예방교육 관련 홍보
6. 비만 예방교육 관련 유관 기관 및 단체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7. 그 밖에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비만 예방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비만 예방교육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과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담당 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생 비만 예방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건강체력교실 운영)** 학교의 장은 비만 학생이 있는 경우 비만 학생의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지원)**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비만 예방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만도 조사)**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생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조사 결과를 성별, 학년별, 학교급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조사 결과를 제4조의 학생건강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강화와 성공적인 비만 예방교육 시행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체계를 마련하여 학생, 학부모 등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의 효율적 시행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 법령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81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 □ 유아교육법

[시행 2020. 9. 25.] [법률 제17080호, 2020. 3. 2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7. 10. 19.] [법률 제14763호, 2017. 4. 18., 일부개정]

제9조(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① 학교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 평가에서 저체력 또는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정규 또는 비정규 프로그램(이하 “건강체력교실”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건강체력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 □ 학교보건법

[시행 2020. 9. 12.] [법률 제17472호, 2020. 8. 11., 타법개정]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의 신체 및 정신 건강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전문개정 2007. 12. 14.]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6조(건강 체력교실 운영)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충청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

3. 미첨부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6조(건강 체력교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충북교육청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므로 재정 수입의 순감소나 재정지출의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